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(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)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

2. 제안이유

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 조항에 의거 기반시설 재투자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69번지, 2071번지
○ 대　　상 : 공공청사 부지 2필지[11,179.0㎡(대), 2,700.1㎡(대)]
○ 기준가격 : 10,146백만원　　※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

- 신당리 2069번지 : 755,000원/㎡ × 11,179.0㎡ = 8,440백만원
- 신당리 2071번지 : 631,700원/㎡ × 2,700.1㎡ = 1,706백만원

○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 현황

- 위　　치 : 옥계동 및 산동읍 일원
- 조성면적 : 2.476㎢(75만평)
- 사업기간 : 2008. ~ 2026.
- 사 업 비 : 8,207억원
- 시 행 자 : 한국수자원공사

○ 추진현황

- 구미 확장단지 1~3단계 준공 : '24. 까지
- 매각수익 재투자 협의 : '25. 1. ~ '26. 4.
- 구미 확장단지 4단계 준공 : '26. 1.
- 매각수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 : '26. 4.
- 공유재산심의회 : '26. 9.

○ 향후추진계획

- 소유권 이전 : '26. 10.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2건	13,879.1	10,146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2건	13,879.1	10,146

취득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사 유	재산소유자	비고
	재산구분	소 재 지	수량(㎡)					
계			13,879.1	10,146				
취득	토지	산동읍 신당리 2069	11,179	8,440	2026년	매각수익 재투자 기부채납	한국수자원공사	기부채납
		산동읍 신당리 2071	2,700.1	1,706				

위 치 도


지티라세
다이소
에이바우트커피
신당1로
하누야
숲불갈비
천지연
신당6동1길
신당6로
우형공원
강동청소년
문화의집
신당리 2069
신당리 2071
구미시
육아종합지원센터


1969대
1482도
1438대
산79-2임
1110-8공
2065공
2067대
2089공
2088대
준주거지역
2074도
2017공
신당리 2069
신당리 2071
2063공
2072대
산114-1도
2073공
1076-9전
2091장
2096장
2102장
2100공
2092장
2103장
1340잡
2109도
1058-3대
준공업지역
2099장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청사. 부지를 기부채납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 확장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향후 공공청사 건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시설 확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취지에 부합하며,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취득하여 별도의 토지 매입에 따른 시 재정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.

- 다만, 해당 부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 공공청사 건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, 향후 행정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,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지 않도록 타 부서간 협의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